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3년 5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3년 11월 1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억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2023년 7월 17일 ~ 2023년 8월 7일**
(판매기간)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2055-5000, kim.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폐쇄형)으로 현금화(환금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실정일 이후 90일 이내)합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지만 공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 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시점까지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1종) 수익증권·후순위(2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선순위 투자자로 최초설정시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비중으로 분산투자하여 가격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손실발생시 후순위 투자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보수, 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등적 손익배분구조가 이 투자신탁의 원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이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15%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부담은

이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 손실부담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보유중인 자산을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의 가격하락, 국내·외 경제 및 시장상황, 금리 등 변수에 따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적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후순위 투자자에 대해 손익분배를 차등화하는 구조로 손익분배 차등화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기존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6.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가 없는 선순위(1종) 수익증권과 성과보수가 있는 후순위(2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성과보수가 부과되므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대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7.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8.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350만좌, 35억원) 이하이거나, 글로벌 주식시장 등이 급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기납입한 수익증권 매입금액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를 통해 환급될 예정입니다.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3.05.31]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 E4013)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후순위 투자자에 대해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어 산출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글로벌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1.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p> <p>■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하위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개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하위 테마 구성은 반도체핵심기업, AI성장리더기업, 자율주행전기차, 바이오혁신리더, 글로벌명품기업, 글로벌우주경제, 클라우드로 구성되며 당사의 정성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설정·운영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p>◇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p> <p>☞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p>※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p> <p>2. 투자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범위내에서 동일비중으로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설정·운영하는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선순위(1종)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선순위(1종) 수익증권·후순위(2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손실발생시 후순위 투자자는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에는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으로 인하여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순위 투자자로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이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15%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부담은 이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 손실부담이 아니므로,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지주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 또는 산하 계열회사에서 7개의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각각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여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며,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20%에 근접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내의 주식비중을 축소하여 채권형ETF, MMF 등에 투자하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익초과분배금을 분배하거나, 이 투자신탁에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부환매하여 채권형ETF, MMF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을 20%이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지분을 50%제한을 준수하고자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동일한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을 이 투자신탁 설정일과 동일한 일자에 설정하여 각 개별 일반 사모집

합투자기구의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동일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보수, 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에 따라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손익에 반영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유중인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의 가격하락, 국내·외 경제 및 시장상황, 금리 등 변수에 따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적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구조(예시)

구분	투자자	금액	비율
선순위(1종) 수익증권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증권1호(사모투자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증권2호(사모투자재간접형)	85억원	85.0%
후순위(2종) 수익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또는 산하 계열회사	15억원	15.0%
합계		100억원	100.0%

(주1) 상기 예시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각각 100억원 규모로 설정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개펀드에서 합산하여 7개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금액을 85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 또는 산하 계열회사에서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각각 15억원씩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2)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개펀드의 투자금액에 따라 후순위(2종) 수익증권의 투자금액은 상기 비율대로 변동될 예정이며, 해당 금액으로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각각 설정될 예정입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원금 및 손익배분 구조(예시)

선순위(1종)·후순위(2종) 투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

이익발생 시 원금 및 수익 배분 순서	①선순위(1종) 투자원금 ②후순위(2종) 투자원금 ③선순위(1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④후순위(2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⑤잔여수익이 있는 경우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가 50:50의 비율로 배분
손실발생 시 손실배분 순서	①후순위(2종) 투자원금 ②선순위(1종) 투자원금 ※후순위(2종) 투자원금이 “0” 이 될 때까지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이후 선순위(1종) 투자원금에서 추가로 차감

■ 투자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7개)

- 한국투자 반도체핵심기업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 한국투자 AI성장리더기업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 한국투자 자율주행전기차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 한국투자 바이오혁신리더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 한국투자 글로벌명품기업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 한국투자 글로벌우주경제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 한국투자 클라우드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 투자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및 구체적인 투자전략은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폐쇄형, 단위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선취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비용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납입금 액의 1.0% 이내	0.5700	0.5000	0.9200	1.2700	229	361	498	-	-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납입금 액의 0.5% 이내	0.3200	0.2500	0.6100	1.0200	154	262	374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 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 관리 및 수익구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 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7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 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투자신탁	-	-	-	-	-	-
비교지수	-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	-

[단위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 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투자신탁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투자신탁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 용하는 투자신탁(전체)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영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영 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영 규모 (억원)	운영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용태	1975	책임 (부장)	-	-	-	-	-1.17	-4.92	15년 4개월

(주1) 책임운영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의사결정 및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영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영전문인력은 책임운영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영전문인력

	<p>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p>투자자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주요 투자위험</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80 837 440 875">구분</th> <th data-bbox="440 837 1460 875">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0 875 440 1144"> <p>원본손실 위험</p> </td> <td data-bbox="440 875 1460 1144">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p> </td> </tr> <tr> <td data-bbox="280 1144 440 1447"> <p>포트폴리오 집중위험</p> </td> <td data-bbox="440 1144 1460 1447">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럴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수종목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므로 관련 종목에서 거래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종목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td> </tr> <tr> <td data-bbox="280 1447 440 1749"> <p>글로벌투자 위험</p> </td> <td data-bbox="440 1447 1460 1749"> <p>이 투자신탁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p> </td> </tr> <tr> <td data-bbox="280 1749 440 1861"> <p>유동성 위험</p> </td> <td data-bbox="440 1749 1460 1861"> <p>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td> </tr> <tr> <td data-bbox="280 1861 440 1993"> <p>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p> </td> <td data-bbox="440 1861 1460 1993"> <p>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지만 공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 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선별적</p> </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원본손실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p>	<p>포트폴리오 집중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럴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수종목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므로 관련 종목에서 거래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종목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글로벌투자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p>	<p>유동성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지만 공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 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선별적</p>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원본손실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p>												
<p>포트폴리오 집중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럴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수종목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므로 관련 종목에서 거래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종목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글로벌투자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p>												
<p>유동성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지만 공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 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선별적</p>												

	<p>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위험이 존재합니다.</p>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후순위 투자자에 대해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실현이익 상이 위험	<p>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유중인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의 가격하락, 국내·외 경제 및 시장상황, 금리 등 변수에 따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적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습니다.</p>
환율변동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타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기간을 따르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p> <p>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타 집합투자기구 대비 비중이 확대 혹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p>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1좌=1,000원)		환매 방법
환매 수수료	환매불가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수익자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대표번호 : 02-2055-5555 / 인터넷 홈페이지 : ki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2023년 7월 17일 ~ 2023년 8월 7일	모집·매출 총액	10억좌 (1조원, 1좌=1,000원) 다만,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 규모(350만좌, 35억원) 이하이거나, 글로벌 주식시장 등이 급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2023년 11월 17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있음
<p>(주1)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p> <p>1.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p> <p>2.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전액이 분배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이 1,200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해지일까지</p> <p>※ 누적기준가격 :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전액이 분배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즉,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 및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이익초과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세전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미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판매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자증권 - 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됩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기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	E40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4014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401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종류명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하지 않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억좌 (1조원, 1좌=1,000원)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350 만좌, 35 억원) 이하이거나, 글로벌 주식시장 등이 급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23년 7월 17일 ~ 2023년 8월 7일
모집장소	<p>판매회사(한국투자증권) 본·지점</p> <p>판매회사는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 수익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합니다.

※ 상장 요건

- 1.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2. 수익증권이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 3. 수익증권의 1좌당 원본액이 500원 이상일 것

※ 상장폐지 요건

- 1.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미만이 되어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2. 수익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액 환매 등이 된 경우
- 3.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주 1)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 3)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수익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1호(사모투자재간접형)	E40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4014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401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23년 8월 8일	투자신탁 최초설정(예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전액이 분배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이 1,200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해지일까지

※ 누적기준가격 :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 전액이 분배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즉,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분배한 경우 및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이익초과분배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당해 이익분배금 및 이익초과분배금(세전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미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kim.koreainvestmen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23.05.31 기준]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서용태	1975	부장	-	-	-	-	-1.17	-4.92	15년 4개월
<이력> -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금융공학 석사 - 2006.03 ~ 2009.05. : 푸르덴셜자산운용 퀀트리서치팀 - 2009.06 ~ 2015.02 : KB자산운용 해외운용팀 - 2015.03 ~ 2023.04 : 삼성자산운용 글로벌EMP운용팀 - 2023.05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GIS운용본부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 자기구 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	-	-	-	-	-	-	-	-	-
<이력>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한국투자신탁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구분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책임운용전문인력	서용태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책임용전문인력	-	-	-
----------	---	---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	-
-	-
(주 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김정훈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11월 16일
-	-
(주 1)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 (재간접형), 폐쇄형, 단위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 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하위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개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미래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하위 테마 구성은 반도체핵심기업, AI성장리더기업, 자율주행전기차, 바이오혁신리더, 글로벌명품기업, 글로벌 우주경제, 클라우드로 구성되며 당사의 정성적 리서치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설정·운영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집합투자증권	50%초과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고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주식	50%미만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p>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p>
	<p>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p>	<p>-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u>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제4호 및 제5호</u>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u>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u>제16조 제4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4호</u>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 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호,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신탁계약서 제17조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p>제 3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p>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p> <p>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특성(투자전략 및 투자대상, 펀드 종류, 운용회사 등) 및 편입비중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투자제한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p>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p>	<p>-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u></p>	<p>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간</p>

	<p><u>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u></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u>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 249 조의 7 제 5 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u></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u>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u></p> <p>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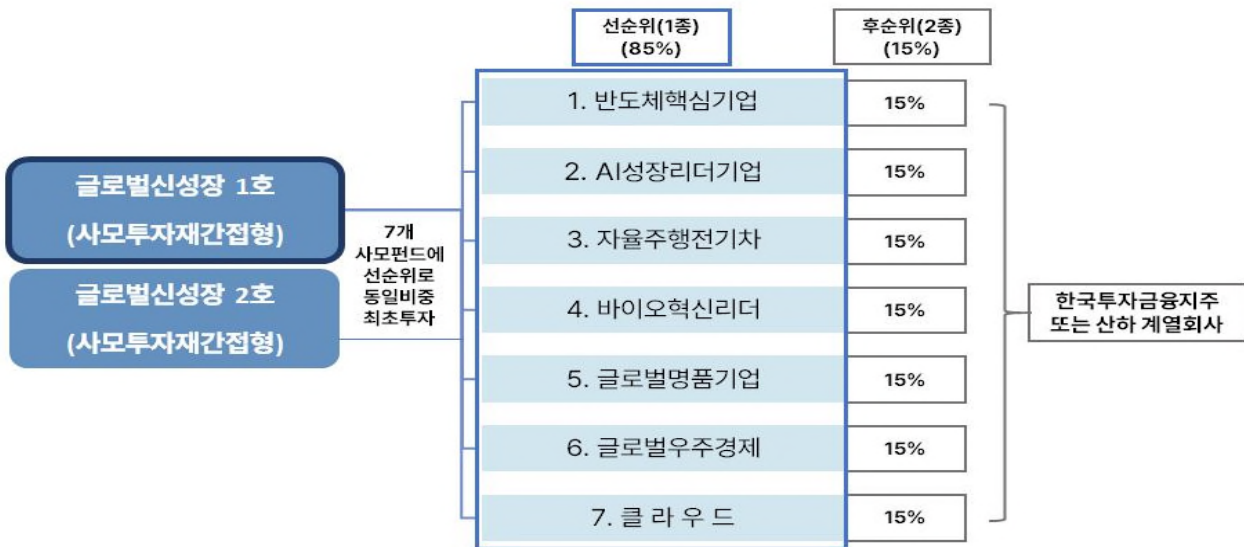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범위내에서 동일비중으로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2) 상세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설정·운용하는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선순위(1종) 수익증권 투자자로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각각 선순위(1종) 수익증권·후순위(2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발생시 후순위 투자자는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

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에는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으로 인하여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순위 투자자로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우선 손실부담이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15%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부담은 이 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을 기준으로 하는 우선 손실부담이 아니므로,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지주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 또는 산하 계열회사에서 7개의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각각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손실(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을 우선 부담하여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며, 기준수익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투자비율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20%에 근접한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내의 주식비중을 축소하여 채권형ETF, MMF 등에 투자하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이익초과분배금을 분배하거나, 이 투자신탁에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부환매하여 채권형ETF, MMF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중을 20%이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지분을 50%제한을 준수하고자 이 투자신탁과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동일한 ‘한국투자 글로벌신성장 증권 투자신탁 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을 이 투자신탁 설정일과 동일한 일자에 설정하여 각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동일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손실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비율(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총투자원금의 약 15%수준) 이내라 하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보수, 비용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은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에 따라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손익에 반영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금액은 선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유중인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의 가격하락, 국내·외 경제 및 시장상황, 금리 등 변수에 따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적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구조(예시)

구분	투자자	금액	비율
선순위(1종) 수익증권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증권투자신탁1호(사모투자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신성장증권투자신탁2호(사모투자재간접형)	85억원	85.0%
후순위(2종) 수익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또는 산하 계열회사	15억원	15.0%
합계		100억원	100.0%

(주 1) 상기 예시는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각각 100 억원 규모로 설정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 개펀드에서 합산하여 7 개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순위(1 종)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금액을 85 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 또는 산하 계열회사에서 후순위(2 종) 수익증권에 각각 15 억원씩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 2)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2 개펀드의 투자금액에 따라 후순위(2 종) 수익증권의 투자금액은 상기 비율대로 변동될 예정이며, 해당 금액으로 7 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각각 설정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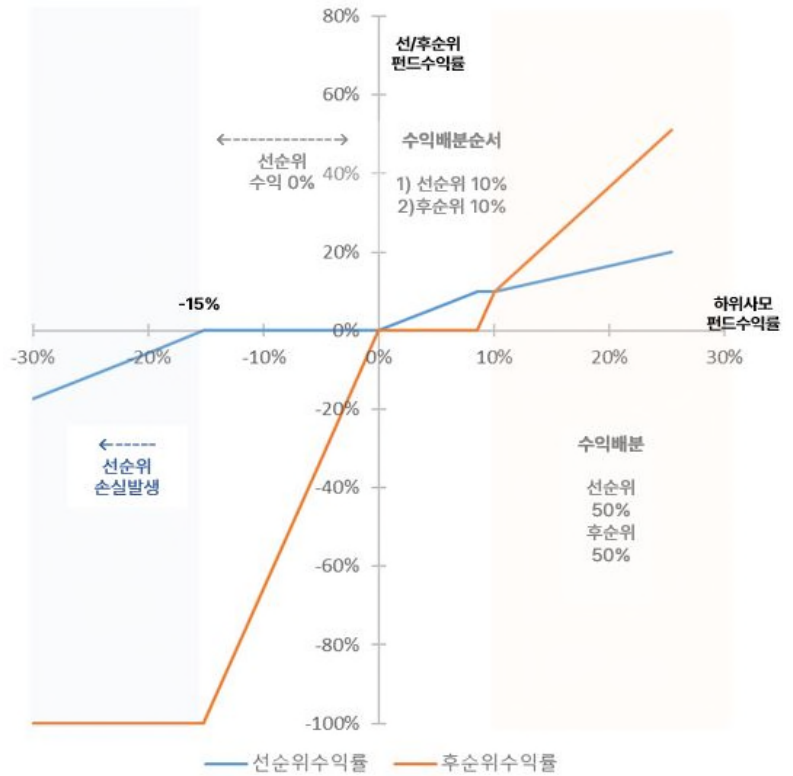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원금 및 손익배분 구조(예시)

- 선순위(1종)· 후순위(2종) 투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이익발생시 원금 및 수익배분 순서	①선순위(1종) 투자원금 ②후순위(2종) 투자원금 ③선순위(1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④후순위(2종)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수익 ⑤잔여수익이 있는 경우 선순위(1종)와 후순위(2종)가 50:50의 비율로 배분
손실발생시 손실배분 순서	①후순위(2종) 투자원금 ②선순위(1종) 투자원금 ※후순위(2종) 투자원금이 “0”이 될 때까지 손실을 먼저 차감하고 이후 선순위(1종) 투자원금에서 추가로 차감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1종)·후순위(2종) 수익률(예시)

일반 사모 운용수익률	선순위(1종) 수익률	후순위(2종) 수익률
27.0%	20.00%	61.00%
25.0%	18.82%	55.00%
20.0%	15.88%	40.00%
15.0%	12.94%	25.00%
10.0%	10.00%	10.00%
8.5%	10.00%	0.00%
0.0%	0.00%	0.00%
-5.0%	0.00%	-33.33%
-10.0%	0.00%	-66.67%
-15.0%	0.00%	-100.00%
-16.0%	-1.18%	-100.00%
-20.0%	-5.88%	-100.00%
-25.0%	-11.76%	-100.00%
-30.0%	-17.65%	-100.00%



(주 1) 상기 수익률 및 그래프는 이 투자신탁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예시 자료입니다.

(주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성과보수 : 각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이익발생시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한하여 성과보수를 부과하며, 후순위(2종) 수익증권의 비용차감 후 투자원금 기준 수익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10.0%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해지일에 수취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기 수익률 예시는 후순위(2종) 수익증권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수익률 예시입니다.

※ 상기 예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주요 내용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구분	내용
투자신탁 유형	투자신탁, 증권형, 개방형, 단위형, 사모형
최초설정일	2023년 8월 9일 (예정)
투자신탁 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예정) 다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26년 8월 5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유중인 투자신탁재산 전부가 현금화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당해 투자신탁재산 전부가 현금화된 날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까지
회계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
회계감사	연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6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보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판매수수료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투자신탁보수(순자산 기준, 연간) : 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 0.60% 2. 신탁업자 보수율 : 0.06% 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 0.04%
환위험 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신탁업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

명칭	주요 내용
한국투자 반도체핵심기업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p>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 반도체 핵심기업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전략/테마 : 국내외 반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 반도체는 통신기기, 컴퓨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지속성장 중이며, AI 혁명, Big Data 기반의 서버 증설과 같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가시적인 테마 2. 투자대상 : 반도체 기업을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IDM,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설계,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 등으로 분류하여 투자하며, 해당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한국투자 AI성장리더기업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p>이 투자신탁은 주로 AI성장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전략/테마 :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 대부분이 AI 기반 신규 솔루션을 기획/출시 중이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 중으로 고성장 예상 테마 2. 투자대상 : 아마존, 오라클 등 고성능 컴퓨팅 관련 기업, 테슬라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 해당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한국투자 자율주행전기차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p>이 투자신탁은 주로 자율주행전기차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전략/테마 : 전세계 각국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법적/제도적으로 전기차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내연기관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될 전망이며 자율주행시스템과 더불어 미래 교통 혁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마 2. 투자대상 : (자율주행)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GM의 자회사 Cruise, 자율주행 관

	<p>련 원천기술 보유 허니웰 등. (전기차) 테슬라, BYD 등 전기차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현대차 등 전기차를 출시중인 기존 완성차 업체들. 해당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p>
<p>한국투자 바이오혁신리더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p>	<p>이 투자신탁은 주로 바이오혁신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전략/테마 : 유전공학의 발달과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 지속발전하는 혁신 분야. 바이오텍, 의료 및 연구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업종에 분산투자하여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대형주에서 성장성에 특화된 중소형주까지 분산 투자 예정 2. 투자대상 : (바이오텍) Moderna, Alnylam 등 DNA, RNA 등 유전공학 기술 기반 신약개발업체. (의료 및 연구장비) Thermo Fisher, 수술용 로봇을 대표하는 Intuitive Surgical, 암진단 키트로 유명한 Exact Science 등 해당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p>한국투자 글로벌명품기업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p>	<p>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명품기업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전략/테마 : 최근 소비트렌드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서 나오는 고객 충성도와 특정 브랜드의 독점적 경쟁력에 따라 브랜드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며, 해당 업체들은 꾸준한 매출 증가와 더불어 꾸준한 실적개선 기대 2. 투자대상 : LVMH, HERMES, APPLE 등 브랜드 소비 주도업체, 아마존, 알파벳 등 소비구조 전환주도업체 등에 투자. 해당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p>한국투자 글로벌우주경제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p>	<p>이 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우주경제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전략/테마 : 글로벌우주산업은 인공위성 관련산업, 우주탐사 영역과 각국의 국방산업이 연계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테마 2. 투자대상 : Boeing, Airbus, LOCKHEED MARTIN 등에 투자. 해당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p>한국투자 클라우드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p>	<p>이 투자신탁은 주로 클라우드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전략/테마 :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가진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근 급격히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서 관련 업종은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으로 구분 2. 투자대상 : (클라우드 컴퓨팅) Amazon의 AWS, Google Cloud, Microsoft의 Azure 등. (네트워크/사이버보안) Fortinet, Cisco Systems 등. 해당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군에 대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구성 예정

※ 상기 7개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작성기준일(2023.05.31) 기준 미설정 상태입니다.

※ 상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내용은 작성기준일(2023.05.31) 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이 실제 운용되는 동안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실제 포트

폴리오는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대상자산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 이 투자신탁은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가 없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구조 및 전략은 예시이며, 실제 운용에서는 당사 사정 또는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환위험 관리 전략 : 환위험 노출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 펀드런 등 유동성 리스크 확대시 당사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대량환매규모 및 지속수준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를 주의/경계/위기/진정 4단계로 구분하고, 유동성 체크, 펀드런 대응팀 구성 등 각 단계별 현상에 따른 방안을 구축하여 대응합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 가격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 및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주권 및 외국주권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국내주식 및 외국주식 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의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시장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한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해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의 이자와 원금 등에 대한 회수완료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

<p>및 RP매입 위험</p>	<p>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p>
<p>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p>	<p>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금융기관 간 초단기자금 대출(이하 콜론이라 함)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포트폴리오 집중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수종목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므로 관련 종목에서 거래정지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종목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글로벌투자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여러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상장되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다양한 기준과 규제(회계, 감사 및 재무 보고 기준, 청산 결제 절차, 배당에 관한 세금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의 변화 등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 위험이 있습니다.</p>
<p>유동성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u>환매가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u>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u></p>
<p>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투자</p>	<p>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p>

<p>에 따른 투자위험</p>	<p>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지만 공모집합투자기구 대비 운용 유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특정종목, 특정섹터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거나 배제되어 더 많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처분이 지연되어 투자신탁계약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위험이 존재합니다.</p>
<p>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정보 접근 제약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기준 가격 관련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선순위·후순위 투자자에 대해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해당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히 반영되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도 불완전한 상태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부과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가 없는 선순위(1종) 수익증권과 성과보수가 있는 후순위(2종) 수익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선순위(1종)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후순위(2종)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성과보수가 부과되므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대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실현이익 상이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지만,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유중인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자산의 가격하락, 국내·외 경제 및 시장상황, 금리 등 변수에 따라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종류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200원(누적수익률 20.0%)을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적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상승하지 않습니다.</p>
<p>재간접 투자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타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기간을 따르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해</p>

	<p>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p> <p>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타 집합투자기구 대비 비중이 확대 혹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p>
재간접 투자에 따른 추가 비용	<p>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에 명시된 보수 이외에 재간접 투자에 따른 피투자신탁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 시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위험	<p>이 투자신탁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하므로 특정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자금송환 위험	<p>이 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유동화증권 투자 위험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동화증권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중 일부를 조합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발행된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p> <p>따라서,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실제 수익률이 목표 만기수익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p>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고유 위험	<p>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부동산 PF, 대출채권, 파생상품, CDS계약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고위험자산인 경우도 있으나 신용평가사 부여등급은 짧은 만기 및 신용보강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p> <p>구조화를 통해 높은 등급의 증권으로 발행되나, 실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기초자산은 부여등급보다 고위험자산일 수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상장거래시 가격괴리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상장된 이후에도 이 투자신탁의 거래가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p>
<p>오퍼레이션 위험</p>	<p>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p>환매연기 위험</p>	<p>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p>공정가액 산정위험</p>	<p>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p>
<p>운용실적 위험</p>	<p>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p>
<p>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p>

	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위험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기존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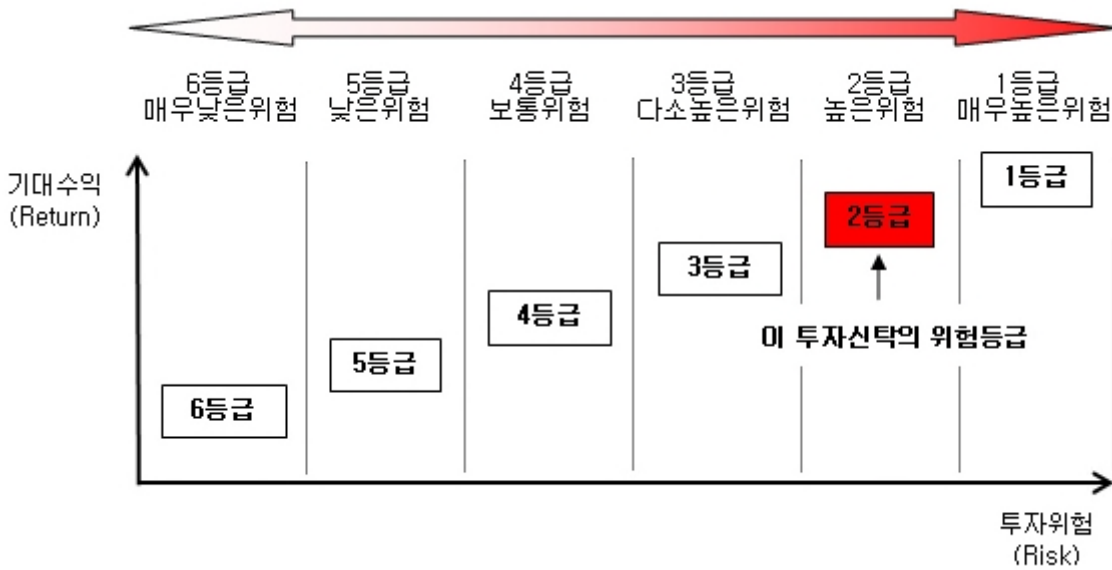
	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p>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p> <p>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미래 신성장 주도 테마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환매가 불가능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외 주식 하락 등에 따른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도 노출되고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하므로, **6개의 투자 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 및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전·후 위험등급 및 변경사유

변경일	변경전 위험등급	변경후 위험등급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국내·외 부동산, 자원 등 실물관련자산(중위험자산 제외)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 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중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①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 자

산,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투기등급채권 등 자산이란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급), CP(A3급),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③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이상), CP(A2-이상), 현금성자산,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초자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및 담보수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습니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합니다.
7.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1좌를 1,000원으로 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모집기간 중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에 따라 선순위(1종) 수익증권·후순위(2종)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해당 손익분배 차등화 구조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p>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p>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으로 평가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채권평가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지분증권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등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 제20조에 따른 적용방법(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등). 다만, 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을 따름
파생결합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이 최종시가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과 채권평가회사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실물자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또는 기준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 1. 부동산(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 : 취득가격 나.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 : 매 1년마다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 다만, 수익증권이 상장되지 않았으며,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큰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액과 전년도 장부가격의 괴리가 15%미만 발생 시 전년도 장부가격으로 평가 2) 감정평가액이 전년도 장부가격보다 작은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평가 2. 실물자산 : 취득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함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운용담당 총괄본부장, 마케팅담당 총괄본부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

	스·위험관리담당부서장
업 무	<p>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방법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환매불가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환매불가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총 보수· 비용)	합성총 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0100	0.5000	0.0400	0.0200	0.5700	-	0.5700	0.9200	1.2700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0100	0.2500	0.0400	0.0200	0.3200	-	0.3200	0.6100	1.0200	-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발 생시	-	-	-	사유발 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비용 예시 : 예약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증권·선물·옵션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주 3) 이 투자신탁은 증권 의 차입 및 대여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금융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발생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7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6) 동종유형 총보수·비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	-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8	218	280	-	-
-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9	361	498	-	-
수수료선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3	117	152	-	-
-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4	262	374	-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연간 [0.7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각각 [납입금액의 1.0%, 납입금액의 0.5%]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23년 7월 13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

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배당금 등을 수령한 경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매각·상환됨에 따라 매각·상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2. 투자대상자산에 투자·운용한 이후 투자신탁재산 내에 여유현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다만,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

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개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금액은 전순위 투자자인 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과표기준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향후 소득세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기간 동안 발생된 손익에 대한 과세범위 및

과세방식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시 기존 비과세 되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기존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조세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기	-	-
제 2기	-	-
제 3기	-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 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1기	제2기	제3기
	-	-	-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수익			
운용비용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기타비용			
당기순이익			
매매회전율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상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기타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을

[단위:주,백만원,%]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을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을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주 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합 계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 1)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억좌,억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제1기								
제2기								
제3기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	-	-	-	-
투자신탁					
비교지수					
수익률 변동성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기 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	-	-	-
투자신탁					
비교지수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3.05.31. 현재 / 단위: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합계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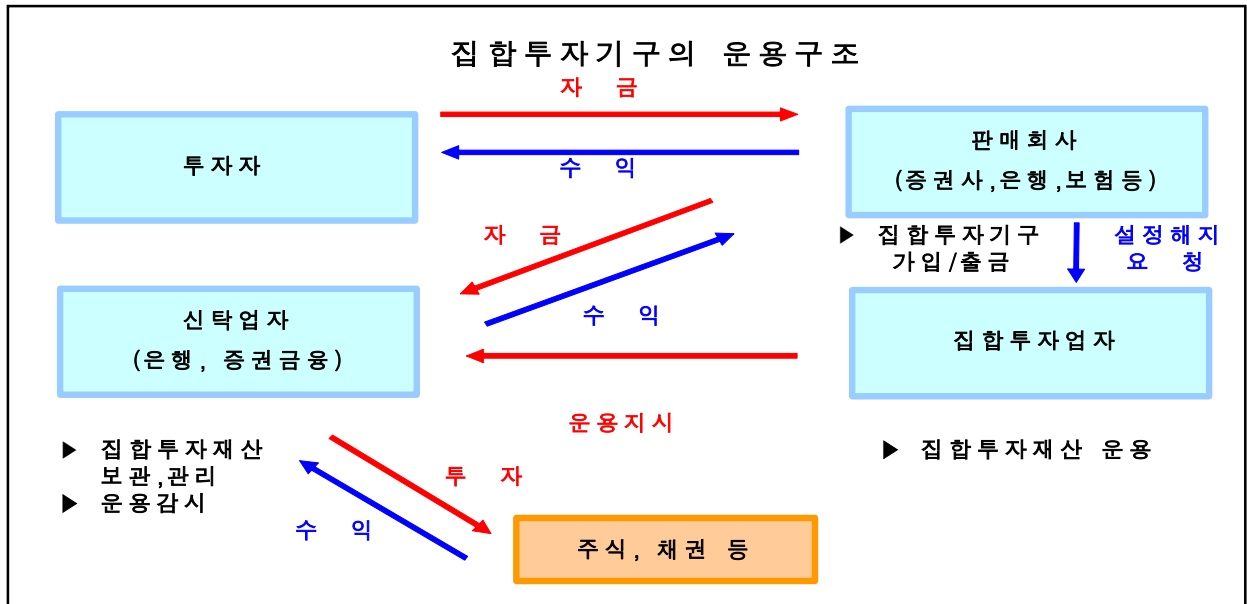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5)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별 종목을 해당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곱하여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연락처 : 02-2055-5555, kim.koreainvestment.com)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07.16 : 한국투자신탁 설립 - 2000.06.04 : 한국투자신탁 증권사 전환 - 2000.06.28 : 한국투자신탁운용 분리 설립 - 2005.04.01 : 동원금융지주그룹 편입 (상호변경:한국투자금융지주) - 2005.07.04 : 동원투자신탁운용(주)를 흡수합병 - 2008.10.02 : 한국투자운용지주 편입 - 2012.07.30 : 한국투자증권 편입 - 2022.07.29 : 물적분할을 통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설립
자본금	660.5 억원
주요주주 현황	한국투자증권(100%)
이해관계인	판매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1.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2.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인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제23기 (2022.12.31)	제22기 (2021.12.31.)	계정과목	제23기 (2022.1.1.~ 2022.12.31.)	제22기 (2021.1.1.~ 2021.12.31.)
현금및예치금	110,805	6,587	영업수익	137,094	148,123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277	50,110	영업비용	86,816	96,821
기타포괄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	2,152	1,690	영업이익	50,278	51,302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주식	104,005	92,257	영업외수익	5,573	2,522
대출채권및수취채권	945	806	영업외비용	14,024	8,701
유형 자산	5,549	7,200	법인세차감전	41,827	45,123
기타 자산	33,544	40,029	법인세비용	10,740	12,037

자산총계	267,277	198,679	당기순이익	31,087	33,086
예수부채	50,403	136			
기타부채	33,530	46,748			
부채총계	83,933	46,884			
자본금	66,050	66,050			
자본잉여금	10,735	10,7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14	353			
이익잉여금	105,745	74,657			
자본총계	183,344	151,795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5.31. 현재 / 단위:억원]

집합 투자 기구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부동 산파생	특별자 산및특 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 금융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투자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83,562	83,932	10,448	-	46,157	19,008	99	706	35,465	35,719	315,09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연락처 : 1588-7000, www.citibank.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증권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2) 의무

- 1. 선관주의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운용행위감시 등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법 제8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6.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7.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44층 (연락처 : 02-769-7800, fs.miraeasset.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88 (02-2251-1300, www.koreaa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제금융로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

(2)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3.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 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격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

12의2.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산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kim.koreainvestmen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 (상호)	관계			
-	-	-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두자신탁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	-	-	-	-

(주 1) 작성기준일 기준 최근 1 년간의 내역입니다.

(주 2)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로 안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집합투자기구간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지분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가. 지분증권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수익률기여도 및 기타기여도 등을 평가 나.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Pool을 구성한 후 Pool 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채무증권 관련	1. 기본원칙 - 투자자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선정 2. 기여도 평가방법 - 정기적으로 관련부서(운용, 리서치, 매매 등)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과 펀드운용, 운용전략 및 기업분석업무, 매매업무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3. 위탁배정 - 투자중개업자별로 재무건전성 및 기여도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그룹을 결정하고 그 그룹내에서 투자중개업자 지정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금

구 분	내 용
투자주체	한국투자신탁운용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승인일자	2023.06.16
투자집행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시점에 회수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계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환율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거래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